

1. 개정 이유

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해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「경찰공무원법」이 개정(법률 제21390호, 2026. 2. 27. 공포, 2027. 2. 28. 시행)됨에 따라, 마약류검사의 실시대상, 시기, 주기, 방법,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경찰공무원 복무규정」에 「경찰공무원법」에서 위임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(안 제1조)
- 나. 마약류검사의 실시대상을 마약 관련 업무 담당, 마약류 검사 담당, 기관장 등 지휘권자,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해 경찰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기관·부서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함(안 제15조의2제1항)
- 다. 마약류검사는 연 1회 이상 예고 없이 불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방법은 인권침해 요소가 적은 타액검사의 방법으로 함(안 제15조의2제2항).
- 라. 경찰공무원이 측정 결과에 불복 시 다른 방법으로 재검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(안 제15조의2제3항)
- 마. 그 밖에 구체적인 검사 항목 등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함(안 제15조의2제4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경찰공무원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특기할 사항 없음

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

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관한”을 “관하여 「경찰공무원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3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마약류검사) ① 「경찰공무원법」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의 투약, 흡연 또는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(이하 “마약류검사”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마약수사 등 마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
2. 「경찰공무원법」 제22조의2에 따라 마약류검사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
3. 경찰기관의 장 등 업무의 책임도를 고려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찰공무원
4. 그 밖에 건강 및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찰기관 또는 부서에 소속된 전부 또는 일부의 경찰공무원

② 마약류검사는 예고 없이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고, 타액검사의 방법으로 한다.

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타액검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찰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모발 채취 또는 소변검사 등의 방법으로 다시 검사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검사 항목 등 마약류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<u>관한</u>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관하여 「경찰공무원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---.
<신 설>	제15조의2(마약류검사) ① 「경찰공무원법」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의 투약, 흡연 또는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(이하 “마약류검사”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마약수사 등 마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2. 「경찰공무원법」 제22조의2에 따라 마약류검사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3. 경찰기관의 장 등 업무의 책임도를 고려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찰공무원 4. 그 밖에 건강 및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찰기관 또는 부서에

소속된 전부 또는 일부의 경찰공무원

② 마약류검사는 예고 없이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고, 타액검사의 방법으로 한다.

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타액검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찰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모발 채취 또는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다시 검사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검사 항목 등 마약류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감사담당관	
연 락 처	02-3150-3174